

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

## 4-4.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(소득세) 감면



사회적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(소득세) 감면

### 지원 대상

-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<sup>182)</sup>으로 인증받은 내국인

### 사회적기업이란?

-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
-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

### 지원 내용

-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(소득세) 100% 감면, 그 후 2년간 50% 감면
- 감면 한도 : 1억원 + (취약계층<sup>183)</sup>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× 2천만원)

### 유의사항

-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님
- 농어촌특별세 과세
- 다음의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음
  - ① 법인세(소득세)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
  - ②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
  - ③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,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등

182)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2조 제1호

183)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2조 제2호

### 절차 및 제출서류

-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
### 관련 법령
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5조의 6,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79조의 7

### 사회적기업 문의처

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: <http://socialenterprise.or.kr>